

<p>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③ (기재생략)</p> <p>제 9 조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 (기재생략)</p> <p>제 10조(발주서의 전송, 취소 및 변경)</p> <p>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,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발주서의 취소나 변경이 제한됩니다.</p> <p>②~③ (기재생략)</p> <p>제 11조(채권확정) (기재생략)</p> <p>제 12조(대출취급 및 제한)</p> <p>① 은행은 제10조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주서를 기초로 하여, 발주서등록일부터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까지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~③ (기재생략)</p> <p>제 13조(한도 감액, 정지) ~ 제18조 (기타 특약사항) (기재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9 조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0조(발주서의 전송, 취소 및 변경)</p> <p>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대금지급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과의 납품계약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,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발주서의 취소나 변경이 제한됩니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1조(채권확정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2조(대출취급 및 제한)</p> <p>① 은행은 제10조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주서를 기초로 하여, 발주서등록일부터 납품기한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3조(한도 감액, 정지) ~ 제18조 (기타 특약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	<p>체상</p> 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개정 시행일: 2019년 7월 4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